

한온시스템 인권 헌장

1. 개요

가. 인권헌장 제정 목적

한온시스템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한온시스템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광범위한 국제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과 지침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은 한온시스템의 모든 임직원 (임원 및 직원, 비정규적인 직원 포함), 국내외 제조 및 판매 기업, 계열사 및 합작 기업에 적용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의 임직원은 협력사, 판매 및 서비스 조직과 협업할 때 본 인권헌장을 준수하며,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이 인권 조약을 존중할 것을 권장한다. 본 인권헌장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이 현지 국가의 법령과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현지 법령과 규정을 우선 준수하며, 현지 국가의 법규,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인권헌장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2. 기본 원칙

제 1 조 산업안전 보장

한온시스템은 사무실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관리 및 지원을 포함한 육체적 및 정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 조 근로조건 준수

한온시스템은 사업 영역이 있는 각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제공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임무 수행에 적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역량 및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한온시스템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혼인 여부 또는 임신, 가족 상황,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의견 또는 단체에 근거하여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지 혜택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사항에서 어떠한 임원 또는 직원도 차별하지 않고, 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료를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는 조직 문화를 수립한다.

제 4 조 인도적 대우

한온시스템은 임원 및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개인정보보호

한온시스템은 직원들의 개인 및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한온시스템, 그 계열사 및 한온시스템을 대리하여 운영하는 모든 사람의 데이터 수집, 이용, 공개, 보관, 접근, 이전 및 기타 처리 활동이 유럽 개인정보법 (GDPR)을 준수하고 적절히 처리되도록 글로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보유한다.

제 6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한온시스템은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 7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한온시스템은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이와 같은 부당한 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교육 기회가 업무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한온시스템은 어떠한 임직원에게도 자발적이지 않은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제 8 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한온시스템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거주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제 9 조 고객 인권 보호

한온시스템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리 활동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한온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확립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제 11 조 환경권의 보장

한온시스템은 환경 오염이 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3. 고충처리절차

한온시스템은 국내 언어로 인권 침해나 인권 위험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채널을 운영한다. 해당 채널은 해당 침해의 피해자이거나 해당 침해를 인식한 관리자, 직원 및 기타 개인 또는 조직(신고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보고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관련 부서 등은 개별 보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한다.

① 인권침해 신고 채널

국내:

- 한온시스템 윤리 핫라인
- <https://www.hanonsystems.com/Kr/Main/HotlineInfor>
- 이메일: Hotline@hanonsystems.com
- 전화: +82-31-5178-8818
- 우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한온시스템 감사팀

해외:

- Hanon Systems Ethics Hotline
- <https://www.hanonsystems.com/En/Main/HotlineInfor>
- E-mail: Hotline@hanonsystems.com
- TEL: +82-31-5178-8818
- Mail(Address): Internal Audit Team, 286,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한온시스템은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및 기타 업계 관행을 참고하여 법무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만약 인권 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평판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 회의,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③신고인 신분보장

한온시스템의 임원 및 직원들은 신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신고 및 통보 과정 중에 전달된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모든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4. 인권 실사

①교육 및 확산

가. 한온시스템은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내부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실행계획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나.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는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에 대하여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이행 현황 모니터링

한온시스템은 전담 인권 리스크 평가 조직을 통해 상호협의를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정기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부적인 과제의 실행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과제에 따른 산출 결과물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Soo Il, Lee
Vice President and CEO

5. 기타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 관련 조항,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본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 ①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②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 (2010)
- ③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④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2011)
- ⑤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 ⑥ 대한민국헌법
- ⑦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 ⑧ 국가인권위원회,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18)
- ⑨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2021)